사학과 졸업 요건에 관한 내부 규정

제정 2026. 10. 1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강원대학교학칙」 제96조(졸업 및 학위)에 따른 강원대학교 학부 공통 졸업 요건 외에 사학과 학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련 근거) 이 규정의 상위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강원대학교학칙」 제96조(졸업 및 학위)
2. 「강원대학교학사운영규정」 제54조(학위취득을 위한 소정요건)

제3조(졸업 소정 요건) ① 학과에서 정한 「학위논문 작성 체제 및 작성요령」에 따른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, 학과에서 실시하는 정기 답사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정기 답사 참여 횟수는 재학 중 4회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편입생 및 전과생은 2회 이상으로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답사 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학과에서 부여하는 대체 과제를 이수하여 답사 참여 1회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1. 「강원대학교학사운영규정」 제27조에 따른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2. 장애 또는 질병으로 답사 참여가 곤란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
3.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적용 대상) 이 규정은 2027학년도 1학기 입학생(편입·전과생을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전의 입학생(편입·전과생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.